

■ 사외이사 활동내역

I. 이사회 등 회차 : 회의일(회의시간) 및 안건 통지일

- 2010년 11월 이사회 개최 내역 없음

II.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

▶ 제 44 기 제 4 차 리스크관리위원회

- 일시 : 2010년 11월 24일 수요일

- 안건 통지일 : 2010년 11월 19일

항목	사외이사 활동내역		비고
	엄홍렬	이근영	
1. 사외이사 성명	엄홍렬	이근영	
2. 참석여부 및 (불참)사유	참석	참석	
3.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	보고안건: 1건 (특이사항 없음)		
4. 의결안건			
가. 제 1 호 안건 - 퇴직연금 심사기준금리 초과 적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	찬성	찬성	전원 찬성으로 가결

III. 이사회의 연간 누적 활동내역 (2010.4~11월)

사외 이사명	이사회		이사회내위원회								활동시간	
			경영위원회		리스크관리 위원회		감사위원회		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			
	개최	참여	개최	참여	개최	참여	개최	참여	개최	참여	목표	실적
김선정	5	4	3	3	-	-	-	-	-	-	-	35
엄홍렬	9	8	-	-	5	5	-	-	1	1	-	70
이근영	5	5	-	-	3	3	-	-	-	-	-	40
김정국	1	1	-	-	-	-	-	-	-	-	-	5
임진부	4	4	-	-	-	-	1	1	1	1	-	30

- 김정국 사외이사는 2010년 4월 20일자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제 44 기 제 1 차 이사회 이후 활동내역이 없음
- 임진부 사외이사는 2010년 6월 13일자로 임기 만료이므로, 제 44 기 제 4 차 이사회 이후 활동내역이 없음

IV.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·연수에 관한 사항

사외이사 성명	김선정	엄홍렬	이근영
1. 교육·연수 실시 내역			
가. 교육·연수 일시 및 내용			
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(불참 사유)	참석	참석	참석
2. 누적 교육 시간	2	2	2

V.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여부

1. 김선정 사외이사

심사항목	충족여부	충족 이유
1. 소극적 요건		
가. 보험업법 제 13 조 제 1 항 각호 또는 제 15 조 제 4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 해당여부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나. 보험업법 시행령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6 항 각호 해당여부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다.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라.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해당여부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마. 당사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,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2. 적극적 요건	충족	사외이사모범규준 제 6 조 제 3 항 제 3 목

2. 엄홍렬 사외이사

심사항목	충족여부	충족 이유
1. 소극적 요건		
가. 보험업법 제 13 조 제 1 항 각호 또는 제 15 조 제 4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 해당여부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나. 보험업법 시행령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6 항 각호 해당여부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다.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라.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해당여부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마. 당사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,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2. 적극적 요건	충족	사외이사모범규준 제 6 조 제 3 항 제 6 목

3. 이근영 사외이사

심사항목	충족여부	충족 이유
1. 소극적 요건		
가. 보험업법 제 13 조 제 1 항 각호 또는 제 15 조 제 4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 해당여부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나. 보험업법 시행령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6 항 각호 해당여부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다.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라.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해당여부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마. 당사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,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	충족	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
2. 적극적 요건	충족	사외이사모범규준 제 6 조 제 3 항 제 6 목

VI.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금 등 지원내역

- 기부 내용 없음